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9. 17.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등 6명
-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9. 17.)

## 2. 제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,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과 활용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,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신체적·인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시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실태조사, 실행계획 수립,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5조~제7조)
- 라. 위탁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- 마. 홍보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 법령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장애인복지법」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
### ○ 비용추계서

- 해당 없음 (비대상)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제정조례안은 정보접근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과 활용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5조에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 수립을 위한 취약계층 현황,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사업 계획, 교육·훈련 계획,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콘텐츠 보급, 정보화 교육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,
-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을 전문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해 추진사업을 홍보하도록 규정함.

-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에 따르면,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83.5%로 전년(82.8%) 대비 0.7%p 부문별로는 접근 수준이 98.1%(전년 98.0% 대비 0.1%p↑), 역량 수준이 76.1%(전년 75.6% 대비 0.5%p↑)로 일반국민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에 비하여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
-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가 신체적·인지적 제약 등의 불편함 없이 정보에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장애인과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적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“특이사항 없음”**

## 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